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관련 형사사건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
사건번호	2026 고합 431
피고인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관련 공소사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 취지	개별 공소사실의 엄격한 심리와 증명 부족 부분의 무죄 요청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전용을 둘러싼 김대기 피고인의 재판에 관한 공개 보도를 접하고, 국가재정의 질서와 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모두 공정하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예산을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실무 공무원이 부당한 압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범죄까지 증명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건 현장을 직접 보거나 공판기록 전체를 확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 보도에 나타난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 측 항변을 구별하고, 어느 쪽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태지 않으려 합니다. 재판부께서 확보하신 증거와 법정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될 책임만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 전용의 객관적 적법성과 피고인 개인의 책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별검사팀은 2022 년 관저 공사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0 억 9 천만 원을 위법하게 전용·집행하도록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공사비 견적과 기존 재원의 차이, 정부청사관리본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반대, 대통령실 관계자의 압박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은 모두 엄중한 심리 대상입니다. 이것은 공소사실과 보도의 요지이지, 이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사실로 서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기 피고인 측은 관저 관련 지출이 공적 목적의 사업이고 관계 부처의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타 부처 예산의 직접적인 전용·승인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항변도 그 자체로 적법성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재판부께서는 예산 과목과 목적, 승인 과정의 실질을 먼저 판단하시고,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그와 별개로 피고인의 직권 행사 및 결과를 특정해 주십시오.

2. 어느 기관이 관리 주체였는지, 어떤 직권이 행사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2026 년 7 월 2 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의 대통령 관저 전환 이후 공사 단계에서의 법률상 ·실질상 관리 주체가 쟁점으로 언급됐습니다. 관저 관리 업무의 소관, 예산 편성의 주체, 실제 비용 지급을 처리한 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 직권의 귀속과 책임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의 조정·보고·협의 업무와, 행정안전부의 예산 신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권한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접 결재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언제나 불가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한 구체적 지시나 감독권 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남용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행위에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를 모두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2022 년 당시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행위 당시 적용되던 국가재정법 제 45 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 46 조는 전용의 범위와 승인·위임의 요건을 정했습니다. 해당 연혁 법령에 비추어 당초 편성 목적, 세항·목, 목적 범위, 전용 금지 사유, 승인 문서의 작성·검토·결재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서류상 승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위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처리가 위법하다는 판단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 123 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관저 공사가 당초 행정안전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어떤 사업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 전용했는지, 국회 의결 취지 및 실무 검토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한 뒤 피고인의 개별 인식과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 주십시오.

4. 면담 일지와 법정 증언을 전체 문맥에서 비교해 주십시오

2026 년 10 월 19 일 보도에 따르면 2022 년 7 월 초 김대기 피고인과 청사관리본부 관계자의 면담 일지에 관해 작성 경위와 실제 대화 내용이 다른 취지로 소개됐습니다. 일지 초안에 사전 검토용 예산 조달 방안이 적혔는지, 누가 언제 면담에 참여했는지는 그 기록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일지 원본·초안·수정본, 작성 시각, 작성자와 참석자의 직접 경험, 면담 전후의 전화·문자·결재 자료를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증언 하나만으로 일지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지도, 반대로 일지에 적힌 표현만으로 직접 지시의 내용과 강도가 모두 입증되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아 주십시오. 반대증거를 함께 평가할 때 비로소 실제로 이루어진 지시의 내용과 범위가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 및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 주십시오

형법 제 123 조와 대법원 2018 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떠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했는지, 그것이 왜 위법·부당한 직권의 남용에 이르는지, 누구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그 결과가 해당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각각 심리되어야 합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이나 관련 기관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했다는 결과만으로 김대기 피고인의 지시·공모·인과관계를 일괄 추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대로 객관적인 의사연락과 역할 분담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엄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외면하지 않되 방어권 행사와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이 주장한 실무자 압박,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 가능성 및 인사상 불이익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거나 법률적 항변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증거 인멸 또는 책임 회피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의혹은 그 일시·대상·의도·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실제 동기와 개입 정도, 개인적 이익 여부가 증거로 확인된다면 구성요건 심리 및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에서 각각 적절히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7. 증명이 부족한 부분의 무죄, 인정되는 부분의 비례적 판단을 청합니다

2026 년 10 월 16 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김대기 피고인에게 징역 4 년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형은 선고가 아니며, 법원은 독립된 증거 판단에 따라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관계 기관의 복잡한 예산 처리 과정에서 김대기 피고인의 지시 또는 공모와 법률상 결과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공소사실에는 무죄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 관여 범위와 결과에 비례하는 양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의 인품이나 개인 사정을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확인되지 않은 미담보다, 이 사건에서 증명된 사실과 책임의 경계를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맺음말. 예산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가 함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부께.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밝히는 일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기관과 여러 사람이 관여한 행정 과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못이 증명되면 그에 맞게 책임을 묻고, 끝내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서는 벗어나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형사재판이 지켜야 할 공정함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김대기 피고인의 실제 행위와 결과를 살펴, 의심이 남는 부분에는 무죄를, 인정되는 책임에는 비례하는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2026 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선택) _____

주소 _____

연락처(선택)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6 부 귀중